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칙

제정: 1961. 10. 07.
개정: 1973. 03. 26.
개정: 2000. 03. 26.
개정: 2002. 03. 23.
개정: 2005. 03. 26.
개정: 2008. 03. 29.
개정: 2010. 08. 04.
개정: 2011. 03. 26.
개정: 2012. 03. 31.
개정: 2014. 03. 29.
개정: 2015. 03. 28.
개정: 2017. 03. 25.
개정: 2018. 03. 24.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7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The Kore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Oral Health)라 칭한다.

제2장 목 적

제3조(목적) 본 학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구강보건학과 치과의료 및 공중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양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4조(지부) ① 본 학회는 지역별 학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회 등) ① 본 학회는 세부분야별 학술활동의 심화를 위하여 산하에 세부연구주제에 따른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제6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강보건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치과 전문의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관한 사항
5. 의도의 양양과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실태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8.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 계약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5장 회원

제7조(회원) 본 학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구강보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치과의를 정회원으로 하며,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보건교사, 구강보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가입)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소정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고문 등) 본 학회에는 고문,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고문 등의 추대) 본 학회의 고문,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나 구강보건학계의 공헌이 현저하고 학식이 탁월한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를 거쳐 추대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과 결의를 준수하고 본 학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 학회의 제 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3조(회원의 권리) ① 평생회비 혹은 직전 2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본 학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평생회비 혹은 직전 2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납부 여부에 따라 차등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14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가. 회원의 사망

나. 회원인 자가 학회의 탈퇴를 원하는 경우

다.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② 제1항 다호의 경우, 본 학회 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6장 임원

제15조(임원 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차기회장 1인
4. 부회장 약간명
5. 총무이사 1인
6. 학술이사 1인
7. 홍보이사 1인
8. 보험이사 1인
9. 편집이사 1인
10. 기획이사 1인
11. 교육수련이사 1인

12. 자재이사 1인
13. 이사 적정수

제16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 사무를 통괄하며 본 학회의 제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7조(차기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임원 구성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18조(회장 등의 선출)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위원회) ① 회장은 사안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중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교육수련위원회
4. 역학조사위원회
5. 기금관리위원회
6. 윤리위원회

제20조(이사의 업무) 각 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업무에 관한 활동기록을 정리 보존하고 총회 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총무이사: 회원관리,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의 편성 등 재무관련업무
2. 학술이사: 학술집담회 및 종합학술대회 관련업무,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및 기타 학술관련 제반업무
3. 홍보이사: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
4. 보험이사: 건강보험제도 연구 및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제반업무
5. 편집이사: 학술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
6. 기획이사: 구강보건 관련 법률과 관계기관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수립과 제반연구업무
7. 교육수련이사: 구강보건학과 관련되는 교육 및 예방치과전공의 수련에 관한 업무
8. 자재이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구강보건관련용품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
9. 이사: 상기 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제반 업무

제21조(감사의 업무)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임원 등의 임기) 본 학회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회장의 중임) 본 학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7장 회 의

제24조(회의 및 의결)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3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 혹은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또는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재 정

제25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6조(관리) 현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총무이사가 보관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처리한다.

제9장 부 칙

부칙(2000. 3. 25)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차기회장제 도입에 관한 경과 조치) 1973년 정기총회 이전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